

심 의 결 과      위안대로가철

의안번호	회의차수	회의일자	제 의 자
제 57 호	제 24 차	1986. 9 . 11	총재 박 성 상

의 안 : 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 이율」 개정

의결사항 : 1. 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이율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.

2. 실시일자 : 1986. 9 . 11 .

제의관계  
법규조항 : 한국은행법 제7조, 제69조 및 제72조

제의취지 : 금융기관이 취급한 수출산업 및 수입대체 소재·부품산업의  
시설 투자 자금에 대한 한국은행의 여신이율을 정하기  
위하여 본건 전기와 같이 의결할 것을 제의함

37 / 45

참 고 : 관계법규조항 발췌

한 국 은 행 법 제 7 조

- ① ( 생 략 )
- ②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이 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통화신용의 운영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명백히 부여된 기타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며 한국은행의 업무, 운영, 관리에 관한 지시 감독을 한다.
- ③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규정, 지시를 발할 수 있다.
- ④ - ⑥ ( 생 략 )

한 국 은 행 법 제 69 조

한국은행은 대한민국내에 있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의 여신업무를 할 수 있다.

1. 다음의 업무결과로 금융기관이 받은 약속어음, 환어음, 기타신용증권의 재할인, 할인과 매매

가-바. ( 생 략 )

2. 다음의 증권을 담보 하는 1년이내의 기한부 대출

가. 이조 제1호에 해당하는 신용증권

나. 정부의 채무 또는 정부가 보증한 채무를 표시하는 유통증권

다-락. ( 생 략 )

3. ( 생 략 )

한 국 은 행 법 제 72 조

- 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69조에 규정된 여신업무에 관한 이율을 정한다.
- ②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69조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여신업무에 관한 기타 표준과 규정을 정할 수 있다.

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 이율」 개정 (안)

현행		개정 (안)		비고
구분	이율	구분	이율	
1. (생략)	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
2. 담보대출		2. 담보대출		
가.-다. (생략)	(생략)	가.-다. 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
라. 기타어음등 증권담보대출 「한국은행의 기타어음등 증권담보대출 취급 규정 제2조 제1항에 의한 대출금 (1)-(2) (생략)	(생략)	라. 기타어음등 증권담보대출 「한국은행의 기타어음등 증권담보대출 취급 규정 제2조 제1항에 의한 대출금 (1)-(2) (현행과 같음) <u>(3) 제3호에 의한 대출</u>	(현행과 같음) <u>연 8.0%</u>	} ○ 대출금리신설 ○ 호제하
(3) <u>제3호</u> 에 의한 대출	( " )	(4) <u>제4호</u> 에 " "	(현행과 같음)	
(4) <u>제4호</u> 에 " "	( " )	(5) <u>제5호</u> 에 " "	( " )	
(5) <u>제5호</u> 에 " "	( " )	(6) <u>제6호</u> 에 ""	( " )	
3. (생략)	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